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게 추천권 부여 및 동포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자격요건 완화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대하고, 우수인재 동포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을 동포에게는 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포가 국내외 기업 근무자로서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어야 하나,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동포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자격을 새롭게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도 개정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이민·국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개요 1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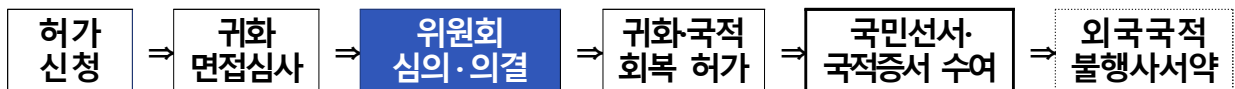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책임자	과 장	최문정 (02-2110-4120)
		담당자	사무관	이호수 (02-2110-4122)

붙임1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개요

□ 개요

- (우수인재 특별귀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
- (우수인재 국적회복)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재외동포)으로서 위의 우수인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
- (국적취득 절차)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우수인재 등의 경우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보유 가능)

□ 위원회 구성

- (근거) 국적법 제22조 및 제23조,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 (역할) 우수인재 특별귀화,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상실 결정 등 심의
 - 1분과: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 2분과: 예외적 국적이탈,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등
- (위원 구성) 위원장(법무부차관) 및 위원 29명(정부 7, 민간 22)

□ 위원회 주요 역할

- (특별귀화) 우수인재 여부 등 고려, 귀화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
- (국적회복) 우수인재 여부만 심의·의결(국적회복 허가 여부 제외)
 - ※ 우수인재로 불인정되었으나 국적회복이 허가 되는 경우는 복수국적(서약) 불가

□ 우수인재 특별귀화 등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계	'11년~'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428	77	25	17	19	18	37	39	29	62	54	51
특별귀화	188	15	12	9	2	6	10	14	16	29	41	34
국적회복	240	62	13	8	17	12	27	25	13	33	13	17

합계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호주	영국	몽골	이란	기타
428	205	28	37	46	20	10	8	7	9	58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5.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11. 한국식품연구원 (KFRI)
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13. 한국기계연구원 (KIMM)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15. 한국전기연구원 (KERI)
16. 한국화학연구원 (KRICT)
17.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18. 한국재료연구원 (KIMS)
1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